

제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 관세사업자(일반관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관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관세자료로도 활용
- 거래에 대한 영수증·송장·청구서 등의 기능을 수행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등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로 총 2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공급받는 자용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제출
-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자가 5년간 보관의무
- 의무불이행 시 공급자에게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가산세는 부과 안함)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1) 일반세금계산서(중이세금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세무서장이 통지)

②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2012년 7월 이후 발급분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과 관련된 혜택 및 제재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한 경우 혜택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세액공제: $\min(\text{발급건수} \times 200\text{원}, \text{연간 } 100\text{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및 지연전송*1한 경우	가산세 적용(미전송시 공급가액의 3/1,000, 지연전 송시 1/1,000)

*1. 지연전송: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까지 전송하는 것을 말함. 이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이 됨

(3)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② 소매업 또는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다만, 소매업의 경우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간주공급 해당재화(단, 직매장반출이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함)

④ 영세율 적용거래(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함)

⑤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비교: 실제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⑥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p>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p> <p>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p> <p>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p> <p>④ 작성연월일</p>	<p>① 공급자의 주소</p> <p>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p> <p>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p> <p>④ 공급품목</p> <p>⑤ 단가와 수량</p> <p>⑥ 공급연월일</p> <p>⑦ 거래의 종류</p>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 등에 대한 제재

필요적 기재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다만, 착오 기재의 경우로서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

- 공급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공급시기

(2) 선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대가를 받고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용역의 공급, 전력·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대가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그 발급하는 때

③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후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① 거래처별로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매월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발급(월합계세금계산서)
-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③ 관계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6.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유	절차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 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 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 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 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사유	절차
공급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붉은 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여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붉은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각각 작성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재 하고, 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급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매출자)가 실질적인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거래 사실 확인신청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예 정 신 고 , 확 정 신 고 또는 경 정 청 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제 2 절 영수증

1. 영수증의 의미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로서,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승차권, 승선권, 입장권 등(단,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영수증 발급 사업자

(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2)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영수증 발급 사업자

- 소매업
- 음식점업(디카점업 포함), 숙박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 입장권 발행 영위 사업의 경우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접수 소포배달용역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정업, 방앗간, 양복점업, 부동산중개업, 주차장운영업 등)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함(단,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영위 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예외적으로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사업 외의 용역의 공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